

사회문제 해결을 위한

한국사회보장정보원-행복나눔재단, 업무협약 체결

- 9월 2일 용산구 행복나눔재단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-행복나눔재단 업무협약 체결-
- 취약계층 아동·청년의 자립 및 성장 지원을 위해 대상자 적극 발굴 -

한국사회보장정보원(원장 김현준)이 지난 9월 2일(수) 용산구 소재 행복나눔재단(이사장 최기원)과 취약계층 아동 및 청년의 자립 지원 등 ‘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 협약(MOU)’을 체결했다.

이번 협약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온·오프라인 네트워크를 활용해,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행복나눔재단의 맞춤형 지원 사업과 연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.

양 기관의 주요 협력 분야는 ▲사회보장시스템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홍보 ▲프로젝트 대상자 발굴 및 추천 ▲기타 양 기관의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에 대한 상호 협력 등이다.

이에 따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한 행복나눔재단과의 핵심 사업들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신속히 닿을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.

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은 “공공의 복지 인프라와 민간의 전문적인 사회공헌 사업이 만나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시너지를 창출할 것”이라며, “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소외되는 아동과 청년이 없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”고 밝혔다.

사진

[사진 설명: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박미야 복지안전본부장 (오른쪽부터), 정영철 정보이사, 행복나눔재단 이상현 본부장, 이보인 본부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. / 한국사회보장정보원]

[붙임자료]

1. 업무협약 추진 개요
2. 협력사업 ‘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사업’ 개요
3. 업무협약서

담당본부	복지안전본부	책임자	박 미 야 본부장	02-6360-6460
담당부서	법부처정보관리부	담당자	김 시 용 부 장	02-6360-4841

□ 추진 목적

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관련 행복나눔재단과의 복지 부분 민·관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

□ 협약 개요**○ 협력기관: 행복나눔재단**

- 2006년부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하는 SK그룹 산하의 사회공헌재단

○ 협약기간: 2026년 9월 2일 ~ 2029년 9월 1일(3년)

※ 3년 경과 후 해지 통보 없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

○ 일 시: 2026년 9월 2일(수) / 10:00 ~ 11:30**○ 장 소: 행복나눔재단 6층 아이룸****○ 참석대상: 총 11명**

- (우리원) 정영철 정보이사, 박미야 복지안전본부장 외 4명
- (행복나눔재단) 이상현 세상파일팀 본부장, 이보인 전략기획팀 본부장 외 3명

○ 협약 주요내용

- 보유 시스템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
- 행복나눔재단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의 대상자 발굴 및 추천
- 기타 양 기관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 업무*

□ 기대 효과

- 민·관협력을 통해 상호 역량 결합 및 공동사업 추진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

□ 협력사업 개요

○ 협약기간: 2026년 9월 2일 ~ 2029년 9월 1일(3년)

※ 3년 경과 후 해지 통보 없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

○ 협력사업 및 내용: 대상자 발굴 및 홍보 부문 협력

연번	사업명	대상	지원내용	규모
1	SK 뉴스쿨 *주요 협력사업	19~34세 청년 (고졸 이상) ※ 우대사항 - 중위소득 120% 이하 - 자립준비청년·다문화가족 ·북한이탈주민 등	-직무교육 : 1년 전액 지원 -생활·주거장학금 : 월 40~90만 원 * SK관계사·기업 인턴십, 채용 등 우대 * 진로상담 및 개인별 취업 지원 (’25년 취업률 99%)	연간 80명, 약 12억 원
2	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프로젝트	장애아동 (중증제외)	-아동용 전동휠체어 지원 -휠체어 안전 사용 교육 지원	연간 20명, 약 3억 원
3	시각장애 점자학습그룹	시각장애인 (고등학교 학습수준)	-1:1튜터링 : 희망 교과목 1개, 주 1회, 120분 지원 -모의고사 응시환경 및 시험지 제공 -인터넷 강의 대체자료 제공 -학습·진로·문화 프로그램 우선 지원	연간 10명, 약 1억원
4	자립준비청년 경제자립 지원 *파일럿사업	자립준비청년 (수도권 거주)	-자립준비청년 금융관리 역량 향상 -관련 교육 및 지원금 제공	연간 6명, 약 3천만 원

※ 협력사업은 재단 및 사업상황에 따라 확대 및 변경될 수 있음

○ 운영일정(예정)

- (’26.9.3.) MOU 관련 언론 보도자료 배포(조건) ... 사보원 배포
- (’26.9.7.) 협약사업 운영 개시



업무협약서



『한국사회보장정보원』과 『행복나눔재단』(이하 “양 기관”이라 한다)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

본 협약은 양 기관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력 사항의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운영원칙)

- ① 본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은 상호 신뢰와 존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한다.
- ② 본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으로서 세부 사항이 필요하거나,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양 기관의 제규정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정한다.

제3조(협력 범위)

- ① 시스템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
- ② 행복나눔재단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의 대상자 발굴 및 추천
- ③ 기타 양 기관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 업무

제4조(비밀유지)

양 기관은 본 협약에 의거한 교류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 사항 및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.

제5조(협약 기간 및 해지)

- ① 본 협약서의 효력은 양 기관이 서명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.
- ② 다만,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해지 통보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- ③ 양 기관은 본 협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필요성이 해소된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따라 해지할 수 있다.

제6조(해석 등)

- ①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거나 본 협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통상의 일반 관례를 따른다.
- ②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거나 본 협약의 일부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양 기관은 서면으로 합의한다.

제7조(기타 사항)

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.

본 협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고 “한국사회보장정보원” 과 “행복나눔재단” 이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.

2026년 9월 2일



한국사회보장정보원
원 장

김 현 준 (인)



행 복 나 누 м 재 단
이 사 장

최 기 원 (인)